

#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에 對한 中共의 干涉

李 相 晃

(서울大 法科大 教授)

<차례>

序論	III. 理論
I. 干涉	IV. 實際
II. 主張	結論

## 序論

中共은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에 始終一貫 反對하여 왔다. 1974年 1月 30日 共同開發 協定이 調印되자 이를 中共에 對한 主權侵害로 斷定하고 결코 容納할 수 없음을 分明히 하였으며, 1975年 6月 22日 韓·日 兩國間에 批准書가 交換되자 同 協定을 「完全히 不法이고 無效」라고 宣言하였다. 最近에 中共은 韓·日 共同開發區域의 西部 接境 近處에서 試掘作業을敢行하였다. 本稿는 韓·日 共同開發에 대한 中共의 挑戰이 現在의 國際法上 過然容納되는지 어떤지를 論證하는 데 그目的이 있다.

## I. 干涉

東支那海의 大陸棚에 世界 最大的 油田이 埋藏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ECAFE報告書가 1969年에 發表되자 韓國, 日本 및 臺灣은 앞을 다투어 海底鑽區를 設定하기에 이르렀다(ECAFE, 1969:3-43). 이들 沿岸國이 設定한 17개의 鑽區中에 무려 13個가 重複되었다. 1970년 가을 韓國, 日本 및 臺灣은 重複 鑽區의 共同開發 原則에 合意하였으나 그 해 12月 中共의 強力한 抗議로 그 試圖는 일단 後退하였다. 그로부터 2年 後에 韓國과 日本은 中共으로부터의 干涉의 主要原因이 臺灣問題에 있다고 보고, 臺灣을 제쳐 놓고 共同開發에 관한 協商을 벌였다. 1973年 10月부터 불어닥친 石油波動으로

1974年 1月 30일에는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 協定」이 調印되기에 이르렀다(美國 國務省, No. 75).

이 共同開發區域은 韓國이 主張하는 領土의 自然的 延長說에 基礎한 오끼나와 海溝를 지나는 最深線과 日本이 主張하는 中間線이 重複하는 약 24,092 平方마일의 海域이다. 이 區域은 20개의 直線으로 이어진 多面體로 東部限界線은 대체로 오끼나와 海溝의 最深線에 가깝게 되어 있고, 西部限界線은 韓·日 中間線과 日·中共 中間線과 대체로 一致한다. 이 協定은 大陸棚의 境界劃定을 無期限 延期하고, 向後 五十年間 兩國이 費用을 반씩 負擔하여 開發하고 거기서 나오는 利潤을 반씩 나누어 갖자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兩國은 面積을 나누는 대신에 開發된 石油 資源의 價值를 兩分하기로 한 것이다.

韓國 政府는 이 共同開發協定이 調印된 후 머지 않아 國會의 批准 同意를 얻었으나, 日本은 무려 四年이란 긴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議會의 批准 同意를 얻어 1978年 6月 22일에 이르러서야 兩國은 同 協定의 批准書를 交換하였다. 日本은 당시에 發展하고 있던 200마일 經濟水域 理論이 이미 從前의 大陸棚 理論을 사실상 代替하여 大陸棚 境界劃定 理論이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에 반드시 그대로 適用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第3次 유엔 海洋法會議의 動向을 보아서 結定하려고 批准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 海洋法會議에서 大陸棚의 境界劃定 條項은 經濟水域의 그것과 같을 展望이었으므로 日本 議會는 결국 批准에 同意하기에 이른 것 같다.

批准을 遲延시킨 理由中의 하나는 中共이 이 協定에 對해 極度의 不滿을 품고 있다는 事實이었다. 中共은 黃海·東支那海의 大陸棚이 基本적으로 中國大陸에서 緣由한 것으로 보아 韓·日 共同開發區域에도 中共의 主權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中共은 韓·日間에 大陸棚共同開發計劃이 1972年末부터 具體的인 交涉段階에 이르자 1973年 3月 15일 “韓國當局이 一方의 으로 外國의 石油探查船을 끌어들여 試掘한다”고 非難하고 大陸棚의 境界가 아직 確定되지 않았으므로 이로부터 緣由하는 모든 結果에 대하여 責任을 지라고 警告하였다(人民日報, 1973. 3. 15). 韓國 政府는 그 다음날 즉각 이에 反駁하고 探查海域이 國際法上 韓國의 主權內에 있음을 밝히고, 中華人民共和國 當局과 大陸棚의 境界劃定에 관해 協商할 用意가 있음을闡明하였다(外務部, 1973. 3. 16). 이에 대해 中共은 反應을 보이지 않았다. 中共의

不滿에 아랑곳 없이 韓·日 兩國은 1974年 1月 30일에 大陸棚 共同開發協定에 調印하였다. 中共은 即刻 韓·日 兩國이 一方의으로 大陸棚 共同開發區域을 設定하였다고 非難하고 大陸棚의 境界는 大陸棚이 大陸의 自然的 延長이라는 原理에 따라 當事國끼리 協商을 통하여 制定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中共은 또한 中共을 따돌리고 韓國과 日本만이 共同開發區域을 設定한 것은 中共에 대한 主權 侵害이며 결코 容納할 수 없는 일이라고 宣言하고, 만일 日本과 韓國이 이 共同開發區域에서 態意의으로 開發을 試圖하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結果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한다고 威脅하였다(人民日報, 1974. 2. 4). 이에 대하여 韓國 政府는 從來의 立場을 堅持하고 中共과 언제라도 協商할 用意가 있음을 再闡明하였다(外務部, 1974. 2. 6).

韓·日 兩國이 드디어 1978年 6月 22일에 大陸棚 共同開發의 批准書를 交換하자 中共은 同 協定이 「完全히 不法이고 無效」라고 다시 抗議하였다(人民日報, 1978. 6. 22). 그 후 最近 數年間 中共은 오끼나와 海溝까지 探查船들을 派遣하여 探查活動을 벌이더니, 特히 最近 2年間에는 韓·日 共同開發區域의 西部 限界線 近處에 4개의 와일드 캣(wild cat) 試掘을敢行하였다. 日本이 이에 抗議하자 中共은 언젠가 있을 協商에 對備하여 中國 大陸棚에 대한 豫備의인 觀察을 하고 있는 바라고 答辯하였다(Harrison, 1983:51).

## II. 主 張

지금까지 中共은 大陸棚의 境界에 관하여 正確한 限界를 밝힌 일은 없으나, 黃海 및 東支那海의 大陸棚이 基本적으로 中國 大陸의 自然的 延長이므로 自然的 延長說에 의해 境界制定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中間線에 의하여 大陸棚의 境界를 制定하는 경우에, 「中共의 大陸棚」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고 한다(International Ocean Institute, 1983:128). 1973年 3月 16日 韓國政府가 中共當局과 大陸棚의 境界制定을 위한 協商에 임할 用意가 있음을 밝혔을 때 表面上으로 中共은沈默을 지켰으나, 그로부터 나흘뒤에 유엔 海底委員會에서 中共代表는 國家間 領海 및 經濟水域의 境界制定을 위한 原則을 밝히고 또한 國家間 大陸棚의 境界制定을 위한 條文案을 提示하였다:

大陸棚이 大陸領土의 自然的 延長이라는 原則에 따라, 沿岸國은 그의 特殊한 地理的 條件에 따라 領海 또는 經濟水域 밖의 背他的 管轄下의 大陸

棚의 限界를 合理的으로 定할 수 있다.

大陸棚이 서로 連結된 對岸國 및 對向國은 平等한 立場에서 協商을 通하여 大陸棚의 管轄의 限界를 共同으로 決定할 수 있다(UN, 1973).

以上과 같이 平等한 立場에서 大陸棚의 境界를 計定하자는 中共이 왜 協商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中共이 北韓과의 立場을 考慮하여 韓國과의 直接交涉의 與件이 아직 成熟되지 않았다고 判斷하기 때문이며, 東支那海의 경우, 臺灣問題가 또한 障碍要素인 것 같다. 또한 中共은 中國大陸 및 海岸에 豐富한 油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隣接國들과의 境界劃定을 위한 交涉을 서두를 必要性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서도 中共이 最近에 韓·日 共同開發區域의 西部에 日·中共 中間線 部近에 남몰래 試掘을 한 점으로 보면,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에 關心이 대단하며, 隣接國들과의 大陸棚의 境界劃定의 必要性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다(Harrison, 1983:51-53).

### III. 理論

自然的 延長說은 大陸棚 理論의 基本으로서 1945年 트루만 宣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宣言에서 自然的 延長說이 大陸棚의 境界劃定의 原理나 方法으로 宣言된 것이 아니고, 다만 大陸棚을 定義하는 基本理論에 不過하였다는 점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트루만 宣言에서 提示된 境界劃定의 原理는 衡平의 原則(equitable principles)이었다. 이 衡平의 原則도 역시 主權國家間에 公平하게 大陸棚의 境界를 計定하는 것을 意味할 뿐이며 어느 具體的인 計定方法이 例示된 것이 아니었다(U.S. Gov't, 1945). 當時에 大陸棚의 境界劃定方法은 大陸棚 制度 自體가 生成中에 있었으므로 具體的으로 確立된 것이 있을 수 없는 狀態였다. 國家間 大陸棚의 境界劃定이 原理로 처음 登場한 것은 유엔 國際法委員會에서 1953年에 提案된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中間線에 의한다」는 것이었다(U.N., 1953: Vol. 1, 134). 當時에는 이 「特別한 事情」이라는 暖昧模糊한 말 때문에 問題가 起起될 것에 對備하여, 紛爭이 생기는 경우 義務的인 仲裁節次에 따라 解決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U.N., 1953: Vol. 2, 264). 그러나 1958年 제네바 海洋法會議에서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中間線에 의한다」는 原則만을 採擇하고 義務的인 仲裁

條項이 削除되어 버려(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450:169), 「特別한 事情」이 問題가 되는 경우 當事國이 直接交涉에 의해 解決하거나 當事國이 合意하여 國際裁判에 의해 解決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로 因해 紛爭의 解決 方法이 杏然하게 되고 말았다.

大陸棚이 基本的으로 領土의 自然的 延長에 基礎한다는 트루만宣言은 1969年 國際司法裁判所에 의해서 다시 確認되었다. 北海大陸棚事件에서 國際司法裁判所는 大陸棚의 境界劃定은 「모든 關係事情을 考慮하여 衡平의 原則에 따라」 划定하되 「各 當事國에게 그에 屬하는 모든 大陸棚을 相對方 國家의 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侵害하지 않게끔 可能한 많이 주는 方式으로」 하여야 한다고 不侵害의 原則의 宣言하였다(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9: Para. 10/(C)(D)). 그러나, 이것은 다만 理想의 表現이다. 同裁判所는 衡平의 原則에 의한 境界劃定에 考慮할 要素로서 海岸의 掘曲, 地質의 構造, 海岸線의 길이 및 資源의 分布를 提示하였다. 裁判所는 中間線方式이 簡單明瞭하여 國家間 海洋境界線劃定에 많이 採用되고 있음을 認定하면서도, 그의 慣習法의 效力を 否認하였다(I.C.J., 1969: Paras. 24, 45-46, 82-83 and 89). 結局 北海大陸棚事件의 當事國들은 裁判所의 判旨를 따라 다시 協商을 벌여 衡平의 原則에 의한 境界劃定에 成功하였다(U.S. Dep't of State, No. 10).

그러나, 國際司法裁判所가 支持한 自然的 延長說은 아이러니칼하게도 그 후에 몇몇의 새로운 紛爭을 일으키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例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네시아와의 티모르海 大陸棚 境界劃定 交涉에서 自然的 延長說을 내세워 티모르海溝의 最深線이 境界線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인도네시아는 中間線으로 이에 맞서, 結局에 兩國은 서로 반씩 讓步하여 最深線과 中間線의 中間에妥協된 境界線을 그었다(U.S. Dep't of State, No. 87). 韓國도 北海大陸棚事件의 判決에서 힌트를 얻어 從來의 策距離線에 基礎한 主張을 撤回하고 새 삼스레 自然的 延長說에 基礎하여 이른바 第7 鎮區를 設定하기에 이르렀다. 等距離線理論에 始終一貫하던 日本은 南韓面積의 半보다도 큰 새로운 鎮區 設定에 驚愕하였으나, 結局 이 重複 海域을 共同開發하기로 合意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비록 境界劃定問題를 50年 以後로 延期하였지만, 오끼나와 海溝하지 빼어나간 大陸棚은 그 價值의 半이 尊重된 셈이며, 東支那海의 다른 곳에서 日·中共間의 未來의 大陸棚 境界劃定에서도 海溝까지 빼어나간 大陸棚

이 部分的으로라도 나마 尊重될 素地를 마련하였다 할 수 있겠다. 事實上 三  
루만 宣言에서와 마찬가지로 北海大陸棚事件에서도 自然的 延長說이 大陸棚  
의 境界劃定을 위한 方式으로 宣言된 것이 아니었다. 自然的 延長說이란 大  
陸棚制度의 大原則으로서 境界劃定을 할 때에 相對國의 大陸棚을 侵害하지  
않도록 尊重하여야 한다는 原理이다. 事實 大陸棚이 自然的 延長 方式에 의  
해서만 劃定된 例는 하나도 없다. 大部分의 경우에 自然的 延長을 識別하기  
가 매우 어렵다는 點이 主要 原因인 것 같다. 오끼나와 海溝는 水深이 300  
내지 2,700미터나 되어 그 識別이 容易하고,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 協定  
에서 그 重要性이 이미 認定되었으므로, 앞으로 있을 韓國과 日本間의 또는  
日本과 中共間의 大陸棚 境界劃定에 반드시 尊重되어야 할, 決定의 重要  
한 要素이다.

#### IV. 實 際

1973年 3月 16일에 韓國政府가 大陸棚의 境界劃定을 위한 協商에 임할 用  
意가 있음을 表明했을 때 沈默을 취하던 中共은 4日 後인 3月 20일에 유엔  
海底委員會 第2小委員會에서 境界劃定에 관해 言及하였다. 中共首席代表 庄  
焰(Chuang Yen)은 領海 및 經濟水域의 境界劃定時에 考慮할 事項으로서 海  
岸線의 掘曲과 길이, 海底의 深度와 傾斜度(陡緩, dǒu-hǔan), 海洋資源의  
條件 등을 들고, 한걸음 더 나아가 國家의 經濟發展의 必要性과 國家安保를  
追加하였다(PRC Mission to the U.N., 1973). 비록 이것들이 大陸棚의 境  
界劃定의 原則으로 直接的으로 主張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海底의 深  
度와 傾斜度가 境界劃定時에 考慮할 事項으로 提示되었다는 점에 注意를 기  
울일 必要가 있다.

境界劃定時에 海底의 深度가 尊重된 것으로는 주로 第二次大戰 以前에 二  
國以上이 隣接하는 潟을 나누는 경우에 船舶의 出入을 便利하게 하기 위해  
航路를 따라 境界線을 定하는 例는 몇 가지 있지만, 海底의 傾斜度에 따라  
境界線을 定한 例는 없다(Rhee, 1982). 海底의 傾斜度를 識別하기가 極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傾斜度에 따라 설령 금을 굽는다 해도 별로 實益이 없으  
며 그것이 그대로 自然的 延長을 反映하는 것이 아니다. 海底의 地質이 地  
形과 다른 경우가 許多하여 海底의 地質도 地層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

이다. 中共이 말하는 絶對的 自然的 延長論은 트루만 宣言의 趣旨와도 符合하지 않으며, 그 후에 發展한 大陸棚의 定義와도 거리가 멀다.

1977年 英·佛 大陸棚 仲裁裁判에서도 裁判廷은 中間線을 適用하지 않는 경우에 選擇的으로 허드딥·허드딥 底地帶(Hurd Deep, Hurd Deep Fault Zone)軸을 따라 境界로 하자는 英國의 主張을 이유없다고 排斥하였다(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979). 1982年 투니지아·리비아간의 大陸棚에 관한 事件에서 國際司法裁判所는 트리폴리탄 峽谷(Tripolitanian Furrow)을 考慮할 關聯事情에서 除外하였다(I.C.J., 1982: Para. 66).

韓國과 中共에 관한 한 黃海 및 東支那海의 大陸棚은 基本的으로 共有 大陸棚이다. 어느 쪽의 土沙가 더 많이 쌓이고 傾斜度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던 간에 境界劃定에는 問題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韓國과 中共의 경우와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對岸國의 경우에는 中間에 어느 한 나라에 속한 섬이 存在하거나 海岸의 烏嶼의 價值가 顯著히 다른 경우를 例外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中間線이 衡平의 原則에 答合한다. 그러나, 日本과 中共이 東支那海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여 中間線이 반드시 妥當하다는 것은 아니다. 東支那海의 大陸棚은 識別이 容易한 오끼나와 海溝로 斷切되어 있으므로 이미 共有大陸棚이 아니다. 中共과 日本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간의 티모르海 大陸棚 境界協定과 東支那海의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 등先例를 따라 東支那海에서 日本이 主張하는 中間線과 中共이 主張하는 오끼나와 海溝를 따르는 最深線과 사이에 重複하는 海域을 共同開發하는 方式을研究해 보는 것이 賢明할 것 같다. 물론 이에는 臺灣과의 問題가 있어서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 結 論

第3次 유엔 海洋法會議에서 採擇한 1982年 유엔 海洋法協約 第83條 1項에 의하면 「對岸國 및 對向國間의 大陸棚의 境界劃定은 衡平한 解決을 얻을 수 있도록 國際司法裁判所 規程 第38條에 言及된 바와 같이 國際法에 基礎하여 合意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本件의 경우 沿岸國 사이에 境界劃定 問題에 따른 紛爭解決에 관한 國際協約이 별도로 存在하지 아니하므로, 國際慣習法과 法의 一般原則 및 附隨의인 手段으로서의 國際裁判의 判決先例와

諸國의 最優秀 法學者의 學說을 따라 劃定해야 할 것이다. 境界劃定에 관한 國際慣習法이 結晶化된 最近의 判例들은 自然的 延長說의 絶對性을 否認하고, 境界劃定의 原理가 아니라 劃定時에 考慮되어야 할 要素라고 한다. 東支那海의 오끼나와 海溝까지 뻗어간 韓半島와 中國大陸에서 緣由한 大陸棚의 否認할 수 없는 形狀은 決定的인 重要한 要素이다. 그러나 韓國과 中共間에 存在하는 大陸棚은 地質 및 地形上의 약간의 差異에도 불구하고 基本的으로 斷切되지 않고 重複하는 共有大陸棚이다. 따라서, 中共은 東支那海의 海底의 地形 및 地質이 多小 中國大陸에서 緣由한 점이 있더라도 韓·中共間의 中間線을 넘어 權利를 主張할 何等의 國際法의 根據가 없다.

### 〈參 考 文 獻〉

#### 外務部

- 1973 「大陸棚 問題에 관한 中華人民共和國當局의 聲明에 對한 大韓民國 外務部의 聲明」, 1973, 3.16.  
 1974 「大陸棚 問題에 관한 中華人民共和國當局에 의한 聲明에 對한 大韓民國 外務部 代辦人의 聲明」, 1974, 2.6.

#### 『人民日報』

- 1973 「大陸棚 問題에 관한 中華人民共和國 外交部 代辦人의 聲明」 1973, 3.15.  
 1974 「大陸棚 問題에 관한 中華人民共和國 外交部 代辦人의 聲明」, 1974, 2.4.  
 1978 1978, 6.22.  
 ECAFE (Economic Commission of Asia and Far East)  
 1969 *Technical Bulletin*, Vol. 2.

Harrison, Selig S.

- 1983 "Conflicting offshore boundary claims," *Chinese Business Review*, Vol. 10, No. 3 (May-June).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1969 *I.C.J. Report*, 1969.  
 1982 *I.C.J. Report, 1982: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I.L.M.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 1979 "Arbitration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the Northern Ireland and the French Republic o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Decision of 30 June 1977,"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18, No. 2 (March-June):397-462.

I.O.I. (International Ocean Institute)

- 1983 *Harvesting the Sea: Delimitation and Exclusive Economic Zone Issues*, Occasional Paper, No.10.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Mission to the U.N.

1973 Press Release, 1973, 3.20. 「庄焰首席代表在海底委員會第二小組會上關於領海和  
雪屬經濟壓問題的發言」。

Rhee, Sang-Myon

1982 "Sea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states before World War II,"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6, No. 3 (July): 564-599.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450.

1953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1 and Vol.2.

1973 *U.N. Document, A/AC 138/SO II/L34*.

U.S. Department of State, Geographer's Office

*Limits in the Sea*, No. 10.

*Limits in the Sea*, No. 75.

1972 *Limits in the Sea*, No. 87, October 9, 1972: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Indonesia Establishing Certain Seabed Boundaries in the Area of the Timor  
and Arafura Seas, Supplementary to the Agreement of 18 May 1971*.

U.S. Government

1945 *Presidential Proclamation* No. 2667, September 28, 1945, 59 Stat. 884, 10  
Fed. Reg. 12, 303.

